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운영지침

2014. 1



- 1. 목 적 1
- 2. 용어의 정의 1
- 3. 추진체계 2
- 4. 추진절차 3
- 5. 지원분야 및 내용 4
- 6. 신청.접수 4
- 7. 평가 및 선정 7
- 8. 협약 10
- 9. 과제의 포기 12
- 10. 과제 완료보고 및 출연금의 지급 13
- 11. 사업참여의 제한 15
- 12. 사업참여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관리 16
- 13.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17
- 14. 지방중소기업청의 제품인증 특례지원 18
- 15. 해외규격열람실 운영 18
- 16. 사업의 관리 19
- 17. 부칙 20
- <별지.별표 및 붙임 목록 > 21

1. 목 적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을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 1) 참여기업 : 평가절차에 따라 선정되어 관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
- 2) 관리기관 : 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집행 및 관리, 사업의 진도관리,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 3) 컨설팅기관 :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사항을 대행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컨설팅사, 시험연구기관, 인증기관 등
- 4) 컨설턴트 : 컨설팅기관에 소속되어 사업에 참여확인 된 후 인증획득 대행 또는 참여기업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자
- 5) 과제책임자 : 사업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임.직원
- 6) 수출실적 : 「대외무역법」 제52조 제3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수출실적(관세청 통관기준)
- 7) 건강관리프로그램 : 기업경영에 대한 「진단 → 처방 → 치유」 방식의 3단계 문제해결형 시스템
- 8) 해외규격열람실 : 해외규격의 온라인 열람을 위해 지방청(또는 지방사무소)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에 설치한 시스템

3. 추진체계

가.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 사업의 협약운영 및 평가에 대한 총괄 등

나. 관리기관

- 관리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사업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 사업의 출연금 관리 및 지급
 - 사업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
 - 사업을 위한 동향분석, 정보 수집 및 배포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다. 지방중소기업청

-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관할 지역의 참여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평가(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우선순위 명부 작성 및 제출

라. 참여기업

- 참여기업의 과제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사업과제 진도관리 및 점검 협조
 - 사업과제 완료보고 제출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 등이 요청하는 사항 등

마. 전문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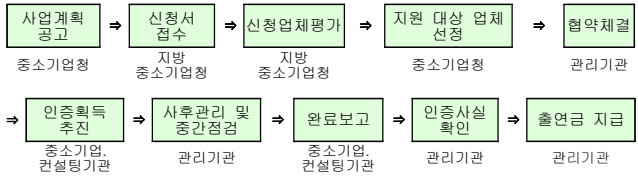
-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가위원회는 인증획득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지방중소기업청 추천 업체의 심의 등을 위하여 각 차수별로 수요에 따라 주요 규격인증별 관련 전문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켜야 함

- 해외인증관련 국가 또는 시험, 검사, 인증관련 경력 2년 이상 보유
- 관련 분야 박사학위소지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5년(7년) 경력자
- 수출 또는 인증관련 단체, 공공기관 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이상인 자
- 2년제 대학이상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관련분야 종사 6급 이상 공무원 등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
-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경영회계 전문가
- 해외의 회계, 법률 등의 자격증 소지자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력 또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자

- 전문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 기타규격인증에 대한 지원여부 심사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무

4. 추진절차



5. 지원분야 및 내용

- 중소기업이 수출할 경우에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 국가규격 및 단체규격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수출기여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특정 해외규격인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원칙적으로 수출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인증은 제외하며, 제품인증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추진절차에 따라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하여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인증비용과 컨설팅기관 과제수행 대행료, 인증 심사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등의 비용(이하 “인증획득비용”이라 함)의 일부를 출원할 수 있다.
- 지원분야는 일반규격인증(【별표1】 참조)과 고부가가치인증으로 나누어 점수평가한다.
 - 일반규격인증은 공고된 【별표1】의 규격인증과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되는 기타규격인증을 말한다.
 - 고부가가치인증은 컨설팅비용을 제외한 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 인증, 심사비용 등의 비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한다.
 -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했으나 관리기관 확인, 전문가위원회 심사에서 고부가가치인증이 아님으로 판명되는 경우 선정에서 탈락으로 처리한다.
- 참여기업은 분야에 상관없이 동일 모집 차수에서 최대 2개까지 규격인증 획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6.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참여자격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컨설팅기관) 다음 각 호중 하나이상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참여 상근 컨설턴트 2명 이상을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 유지(컨설턴트 퇴사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2개월간 공백기간 인정)
 -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컨설턴트로서 1인 이상 창조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능(컨소시엄 대표를 1인 지정하여야 함)
- (컨설턴트) 컨설팅기관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컨설턴트는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고, 【붙임1】의 “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준수, 실천하여야 한다.
 - 컨설턴트의 제품인증지원 실적은 참여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당해년도 포함)의 실적만 인정하며, 신청일 현재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인증분야에 한한다. (지자체 지원사업 등 타 사업 및 개별 인증획득 실적도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자격 보유자는 해외규격 인증분야 1년이상 경력자, 기사(산업기사 포함) 및 기능장자격 보유자는 해외인증분야 2년 이상 경력자로서 최근 2년간(당해년도 포함, 이하 같음) 제품인증 지원실적(공고 규격인증에 한함, 이하 같음)이 기술사 4건, 산업기사 및 기능장 보유자는 5건 이상인 자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외규격인증분야 1년 이상 경력자로서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실적 4건 이상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규격인증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최근 2년간 제품 인증 지원실적 5건 이상
-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규격인증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실적 5건 이상인 자

- 5) 해외규격인증분야 7년 이상 경력자로서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 실적 5건 이상인 자

신청제의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우대 및 가점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지원을 할 수 있다. 우대지원 대상인 경우 평가는 수행하되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지원대상 선정이 가능하다.

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에 따른 흡수평 판매기업
②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해외규격인증추천서 발급기업(평가점수 60점이상)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 기업	3점
②	해외규격인증 교육 이수	1~3점
③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등	2점

- 가점 세부 부여 내용 및 점수는 매년 사업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나.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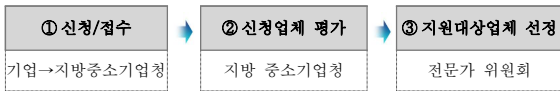
- [별지서식]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7. 평가.선정

가. 평가절차



나. 신청서류 검토

-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토한다.
 - 참여기업의 자격
 - 참여기업 및 대표자의 참여제한 여부
- 신청서 접수시 첨부서류를 검토 후 신청서 기재 내용의 확인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치토록 해야 한다.
-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제한하거나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신청 및 지원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전에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라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신청 이후 협약체결 전까지 사업 계획서상 내용 변경사항(참여기업명 변경, 참여기업 대표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평가

-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별표5】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신청업체를 평가 후 선정추천 최저점수(70점) 미만인 기업을 제외하고, 지원우선 순위를 정하여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으로 통보한다.
-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 등으로 하여금 업체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평가는 수출실적에 따라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으로 분리하여 평가한다. 이때 전체 중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선정비율은 기본계획 및 공고에서 정하며, 신청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라.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지원대상 업체 선정

□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최종 추천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전문가위원회는 인증획득지원 업무 진반에 대한 자문 및 지방중소기업청 추천 업체의 심의 등을 위하여 각 차수별로 수요에 따라 주요 규격인증별 관련 전문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

분야 예로사항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수시로 해당분야 전문가위원을 소집하거나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지원대상업체의 선정

- 중소기업청장은 지역별 중소기업 신청비용, 중소기업 비용, 수출비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전문가위원회로 하여금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가위원회는 지원 우선순위 업체별로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1. 지역별 지원대상업체 평가의 적정성
 2. 과제별 인증획득비용 규모
 3. 해외규격 종류별, 지역별 등 지원규모의 적정성
 4. 기타 규격별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협약

□ 협약의 체결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업체로 선정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참여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참여기업은 【별지서식】의 협약서를 동 사업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작성, 공인인증서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등록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하고 이상이 없으면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시 소요기간과 그 사유를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여 구성한다.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켜야 함

1. 해외인증관련 국가 또는 시험.검사.인증관련 경력 2년 이상 보유
2. 관련 분야 박사학위소지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5년(7년) 경력자
3. 수출 또는 인증관련 단체.공공기관 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이상인 자
4. 2년제 대학이상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5. 관련분야 총사 6급 이상 공무원 등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
6.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경영회계 전문가
7. 해외의 회계.법률 등의 자격증 소지자
8.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력 또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자

- 전문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중복신청, 지원비용조정/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 기타규격인증에 대한 지원여부 심사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무
- 관리기관장은 전문가위원회를 학계, 산업계 등의 관계전문가 7명 내외로 중소기업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성하여야하며, 위원 위촉 및 해촉을 실시하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내부 추천에 따라 호선한다.
- 전문가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의 경우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시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 전문가위원회는 참여기업이 사업참여 제한사유 발생시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예 컨설팅기관 기망에 의한 인증획득 실패 등)하면 이를 심의하여 동 사업 재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 그밖에 평가과정과 별개로 참여기업의 기술분야 예로사항 해결 요청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맞춤형 현장지원과 연계하여 참여기업의 기술

승인을 득한 후 연장 할 수 있다.

- 협약 체결 후 기한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협약의 변경

- 참여기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 또는 컨설팅기관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제 의 일부내용(규격인증 변경, 과제 중 일부포기, 참여기업의 상호 등 변경, 컨설팅기관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참여기업이 관리기관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1. 인증명칭 및 인증품목의 변경 또는 일부 포기
 - . 수출대상국 변경, 바이어와의 협의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발생시 승인 여부 검토 대상이며, 변경 시 정부출연금은 변경 전 정부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 . 바이어 요청서, 수출실적, 수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변경 신청
 2. 컨설팅 기관의 변경 또는 컨설팅계약 해지
 - . 변경사유 및 신규컨설팅 기관과의 계약서(협약당시의 컨설팅기관 컨소시엄 해지 후 직접 인증취득 수행시에는 생략가능)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변경 신청
 3. 참여기업의 상호, 소재지 등의 변경
 - .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또는 인수합병, 양도양수로 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인 경우 변경사항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개인사업자인 경우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 11 -

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기관에 사업포기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사업포기 통보는 사업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로그인 후 “포기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협약포기, 완료진행 도중 포기 시 왼쪽 상단에 “포기신청서 작성” 메뉴를 선택하여 포기사유 작성 후 “포기신청 확인출력”하여 참여기업의 직인 날인 후 관리기관장 앞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협약된 과제를 포기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해 포기승인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단, 2개 인증을 협약하고 과제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협약의 변경으로 보고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선정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협약 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참여기업에 대해 협약체결 종료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한다.
- 참여기업이 협약 후 과제수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거나 무단 포기하여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해약 승인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한다.
- 참여기업이 협약서상의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협약이 해약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조치한다.

10. 과제 완료보고 및 출연금의 지급

□ 과제 완료보고

- 참여기업은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기간 내에 사업의 과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연장의 승인을 받아 과제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참여기업이 사업의 과제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획득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 13 -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 . 참여기업은 변경할 수 없으나, 기업의 양도, 인수합병이 발생하여 그 기업에 양수 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기업은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과제를 승계할 수 있다.
- 4.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협약변경

- . 기타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추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요청 시에는 변경하여야 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 협약의 해지

-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리기관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사업의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
 2. 참여기업이 사업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3. 협약기간내에 과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5. 추진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리기관장은 협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월 말 기준 1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제의 포기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던 중 과제를 계속 수

- 12 -

-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및 컨설팅비용, 공상심사 등 기타 필수 비용 등은 참여기업의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하며, 출금 통장거래내역 사본 및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과제완료 후 완료보고서와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근 3개월 이내 획득 완료한 인증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의 경우 협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 완료보고서를 동 사업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작성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개 인증을 협약한 경우, 과제수행이 모두 완료된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 인증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1개 인증 완료 후에도 각각 완료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 참여기업은 【별지 제7호】에 의한 완료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동 서식에서 정한 과제 추진에 따른 수출액 등 지원성과(예상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 인증서사본 1부(DOC의 경우는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제품 설계도 또는 카탈로그 각 1부)
 - . 시험성적서 1부(인증서 없이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갈음할 경우)
 - . 성과보고서 1부
 - .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 . 참여기업의 출금통장 거래내역사본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 출연금의 지급

- 관리기관장은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을 완료하여 완료보고를 한 경우 협약체결 당시의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에 정부출연금을 전액

- 14 -

일괄 지급한다.

- 정부출연금은 협약체결 이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비용에 대해 업체 규모(수출실적 등)에 따른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산정된 금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 관리기관은 인증서 사실확인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완료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연금을 지급한다.
- 수출실적 허위기재(제출) 등 허위보고 및 관련문서의 위·변조로 출연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을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1. 사업참여의 제한

□ 참여기업의 사업참여 제한

- 관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관리기관장은 협약해약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에 대하여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관리기관장은 참여기업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의 사업참여 제한

- 관리기관장은 윤리강령 위반, 협약해지조건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명시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참여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컨설턴트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컨설팅기관은 진행하는 모든 과제의 컨설턴트를 즉시 변경하고, 7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컨설팅기관이 컨설팅한 기업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 사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컨설팅기관별로 불만족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12. 사업참여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관리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설팅기관은 요건을 갖춘 상태로 관리기관의 공고에 따라 시스템에 신청하여 참여기관의 사업신청일 현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방법 및 점검내용은 실태점검 시 별도로 공지한다.
- 관리기관은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사업종료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연도 불만족 비율이 10%이상 나왔을 경우 일정기간 컨설팅기관에서 차년도에 제외시켜야 한다.
- 중소기업청(지방청 포함)에서도 필요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특정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관련 민원 반복발생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사업참여 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턴트는 자격유지요건을 항상 만족하여야 한다.
 - 사업참여 컨설턴트는 동 사업 실태점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제품인증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컨설팅기관은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컨설팅계약서를 참여기업과 작성해야 하며, 참여기업의 컨설팅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컨설턴트는 반드시 참여확인된 컨설턴트여야 한다.
 - 참여확인 되지 않은 컨설턴트가 컨설팅업무를 수행시에는 동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13.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 지도점검

컨설팅기관 등록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컨설팅기관이 진행 중인 모든 협약기업에 대하여 대체 컨설팅기관을 선택하도록 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 사업참여 제한기준

□ 참여기업 사업참여 제한기준

제한 사유	제한기간
○ 과제수행 포기를 신청한 경우 (협약체결된 인증 견제를 포기하는 경우)	3개월
○ 특별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사업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6개월
○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의 현장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무단으로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등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	12개월
○ 정부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출연금 정산 과정에서 선금과 차액 발생시 그 환급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24개월

* 참여기업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진행되는 과제는 취소됨

□ 컨설턴트 사업참여 제한기준

제한 사유	제한기간
○ 사업운영지침, 윤리강령,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 ○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의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의 현장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참여확인되지 않은 컨설턴트에 의해 컨설팅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12개월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 정부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컨설팅기관 참여자격조건 구비서류등의 위·변조 및 허위보고한 경우	24개월

* 컨설턴트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컨설팅기관은 진행하는 모든 과제의 컨설턴트를 변경해야 함.

□ 컨설팅기관 사업참여 제한기준

제한 사유	제한기간
○ 컨설팅기관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만족 비율이 10%이상 의견이 나왔을 경우	12개월

* 컨설팅기관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컨설팅기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한 컨설팅기관을 변경해야하며, 차년도(12개월) 컨설팅기관에서 제외

- 관리기관장은 과제의 중간점검이나 수행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업에 대하여 지도 점검 할 수 있다.

□ 자료제출

- 참여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컨설팅 계약서, 진행 중 시험현황, 시험성적서 등 동 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지방중소기업청의 제품인증 특례지원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시험하고 발급한 성적서(규격요건에 합당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성적서 및 비용 영수증사본을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중소기업에 소요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 제품인증 특례지원에 관한 구체적 관리 내용 및 절차 등은 관리기관에서 별도 고지한다.

15. 해외규격열람실 운영

-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관리기관장은 수출지원센터 등에 설치된 해외규격열람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관리기관장은 기업의 동 시스템 이용실적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실적 대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실적을 관리하고, 분기말 기준으로 분기별 사용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실적 대장>

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열람자 (전화번호)	열람내역	열람일시

16. 사업의 관리

□ 사업비 관리방법

- 관리기관의 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으로 배정받은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계정호로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장은 매달 정부출연금의 집행실적 등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상·하반기 추진실적을 받기 후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 및 사업비의 정산

- 관리기관장은 사업연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사업완료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단, 다음 연도사업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사후 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을 정산하여 다음연도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의 직접사업비

- 해외규격인증취득비용 등 중소기업 지원목적으로 참여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비용을 직접사업비로 한다.

□ 관리기관의 간접사업비

- 연구개발비/ 위탁사업비는 사업운영과 관련 성과평가, DB관리, 시스템관리 등 외부기관에 조사·연구용역비, 위탁비용 등을 계상한다.
- 교육비는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을 계상한다. 강사비 지급은 관리기관의 내부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기술지원비는 관리기관이 인증획득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세워 기술지원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하는 비용을 계상한다.

□ 관리기관의 간접비

- 간접비는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비용으로 합리적인 업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 인건비는 관리기관의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하며 관리기관의 내부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단,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여비는 관리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되되, 관리기관의 품의 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관리기관 내부규정에 따른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회의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관리기관의 내부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운영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수용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17.부칙

- 동 지침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고시된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3호 (2013. 10. 8))과 세부시행지침은 폐지한다.
- 이 지침 시행전에 지정된 관리기관장과 체결된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관리기관장과 체결된 것으로 보고 관리하여야 한다.
 - 단, 출연금의 지급은 협약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별표 및 붙임 목록

【별지 제1호】 2014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

【별지 제2호】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4

【별지 제3호】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5

【별지 제4호】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6

【별지 제5-1호】 2014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협약서(일반규격인증) 8

【별지 제5-2호】 2014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협약서(교부가가치인증) 3

【별지 제6호】 과제내용 변경요청 공문 예시 18

【별지 제7-1호】 2014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완료보고서(일반규격인증) 9

【별지 제7-2호】 2014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완료보고서(교부가가치인증) 3

【별지 제8호】 맞춤형 기업 지원서비스 신청서 27

【별지 제9호】 ○○○○ 참가확인서 28

【별표 1】 해외규격인증획득 일반규격인증 대상분야 (218개 규격인증) ... 29

【별표 2】 국가별 주요 규격현황 32

【별표 3】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일반규격인증) 36

【별표 4】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소요비용 인정 기준 38

【별표 5】 2014년 해외인증지원사업 신청업체 평가표 40

【별표 5-1】 2014년 해외인증지원사업 제출서류 확인 방법 4

【별표 6】 제품 시험기관 인증기관 자격기준 43

【붙임 1】 컨설턴트 윤리강령 44

【붙임 2】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안내 52

【별지 제1호】

2014년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관할지방중소기업청 :) (이전접수번호 :)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		
주 소					
상시 근로자수	명	과제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E-mail 핸드폰			주요생산품목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불	
전전년도 수출액	불		수출능력구분	수출기업 내수기업	

□ 신청내용

신청구분	사업분야	인증명칭	신청품목	산업분류코드 (HS code)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예상) (교부가가치인증만예당)	정부출연금 한도액 (천원)
품목1					천원	천원
품목2						
계					천원	천원

*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은 인증비, 시험비만 포함한 비용임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추진방법	인증예정기관 (인증기관)	시험예정기관 (시험기관)	컨설팅예정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연락처	기 획득여부 (획득일자)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 참여기업 단독, 경신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컨설팅예정기관 및 컨설턴트/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음
* 최근 3개월 이내 해외규격을 기 획득한 기업의 경우 컨설팅기관은 등록된 기관인 경우만 인정

제품 특성	
기업 특성	수출 기반 <input type="checkbox"/>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input type="checkbox"/>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input type="checkbox"/> 해외민간네트워킹 선정기업 <input type="checkbox"/> 수출인류배터 선정기업 <input type="checkbox"/> 해외지사 <input type="checkbox"/> 수출준비도()
	기술품질성 <input type="checkbox"/> 품질시스템확보() <input type="checkbox"/> 품질관리운영() <input type="checkbox"/> NET <input type="checkbox"/> NEP <input type="checkbox"/> 특허() <input type="checkbox"/> 실용신안()
	가 점 <input type="checkbox"/> 해외규격인증 일반교육이수 <input type="checkbox"/> 해외규격인증 심화교육이수 <input type="checkbox"/> Inno-Biz기업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input type="checkbox"/> 경영혁신형기업 <input type="checkbox"/>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포함) <input type="checkbox"/> 녹색기술기업 <input type="checkbox"/> 녹색사업기업 <input type="checkbox"/> 녹색전문기업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input type="checkbox"/> 수위타격래우수기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기업 <input type="checkbox"/> 가족친화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여성기업 <input type="checkbox"/> 수출유망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 <input type="checkbox"/>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input type="checkbox"/> 글로벌강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input type="checkbox"/> HIT 500 선정기업 <input type="checkbox"/> 해외대형유통망 진출기업
	우대지원 <input type="checkbox"/>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에 따른 효소평 판매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기타 내용	<input type="checkbox"/> 재창업자금 지원기업
<p>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업체 대표자 □</p> <p style="text-align: center;">o o 지 방 중 소 기 업 청 장 귀 하</p>	

【별첨】 2014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업체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별지 제1호】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별지 제3호】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 제4호】의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수출 경쟁력 *수출 기업인 해당	수출액비중 (수출액/매출액*100) 수출준비도 (수출준비액/전년수출액)/전년수출액*100	전년도 재무제표사본 및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실적	수출실적증명원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 기반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참여기관은 '별지 제0호 서식 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인증서 1부
	해외민간네트워킹 선정기업	제출 생략
기술 품질성	수출인류배터 선정기업	제출 생략
	해외지사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수출준비도	외국어타이포그 및 주미사업개발과(과) 홍보지 사본1부
	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가 점	특허·실용신안 등록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1부 제출 생략
	특허·실용신안 등록	특허·실용신안등록증 1부 (개인/법인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KILKIR-사랑장기형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수료증 1부
	Inno-Biz 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수출 컨소시엄 참여기업	
	녹색기업(기술, 사업, 전문)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등기부등본(법인) 1부
	수위타격래우수기업	수위타격래우수기업 확인서 1부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1부	
우대 지원	장애인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HIT500 선정기업	
	해외대형유통망 진출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1부 (서류미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효소평 판매기업	제출 생략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별지 제2호】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귀 기관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조회,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중소기업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③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참여 및 출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출연금 지급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 및 법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3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제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제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월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o o o (인)
 대표자 o o o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상호(법인명)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결산일(설립일)			
사업장 주소	전 화() 휴대폰()			
구 분				
상한 기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나요?		예	아니오
	상시근로자수(1,000명 미만)	명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억원		
	자기자본(1,000억원 미만)	억원		
	3년 평균 매출액(1,500억원 미만)	억원		
독립성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아니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아니오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합산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 또는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나요?		예	아니오
유예 기간	유예기간 증인가요?		예	아니오
			해당없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명 귀하

서약서

위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명 귀하

(유의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된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됩니다.

< 작성요령 >

법인사업자로서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은 모든 란에 체크하고, 법인사업자로서 다른 법인과 출자관계가 없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①-④까지만 체크

- 주된 업종 : 해당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기재(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름)
- 상한기준 적합 여부 : 상한기준 모두에 적합 할 경우 "예"에 체크하고,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아니오"에 체크
- 유예기간 적합 여부 : 업종별 규모기준에 "아니오"를 체크한 경우, 사유가 발생하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예"에 체크하고, 3년을 경과한 경우 "아니오"에 체크. 업종별 규모기준에 "예"에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에 체크하고, 해당하면 "아니오"에 체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에 체크하고, 해당하면 "아니오"에 체크
- 관계기업과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 3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에 적합하면 "예"에 체크하고,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아니오"에 체크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 회원가입 후 해당기업의 관계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기능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관리기관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자본금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 금액
- 자기자본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
-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3년 평균 매출액 : 지난 3개년간의 매출액을 합하여 3으로 나눈 금액

【별지 제5-1호】 일반규격인증

2014년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협약서

한국산업기술시험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참여기업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이하 "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과제 개요)

접수번호 :

관리번호 :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			
주 소					
상시 근로자수	명	과제책임 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E-mail 핸드폰	주요생산품목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불	
전전년도 수출액	불		수출능력구분	수출기업 내수기업	

□신청내용

신청구분	사업분야	인증명칭	신청품목	산업분류코드 (HS code)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예상) (고부가가치인증만해당)	정부출연금한도 액 (천원)
협약1					천원	천원
협약2						
계	과제수행기간*				천원	천원

* 과제수행기간은 협약체결 시작일로부터 1년임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추진방법	인증예정기관 (인증기관)	시험예정기관 (시험기관)	컨설팅예정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연락처	획득여부 (획득일자)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 * 참여기업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컨설팅예정기관 및 컨설턴트/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음
- * 최근 3개월 이내 해외규격을 기 획득한 기업의 경우 컨설팅기관은 등록된 기관인 경우만 인정

제 2조 (정부출연금의 산정)

지원분야별/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 인증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 3조 (과제의 수행, 완료보고 및 정부출연금의 지급)

- (을)은 과제수행 완료 후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이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획득비용 실제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산정하고 지급한다.
- 2개 이상의 인증을 수행한 경우 모든 인증 완료 후 전항②을 따른다.
- 2개 이상의 인증 구분은 발행된 인증서 건수에 의거한다.

제 4조 (기 타)

- 과제수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을)이 본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내에 과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본 협약은 자동 해약된다.(관리기관이 승인한 참여기업은 제외)
- 과제수행 중 소요비용 산정기준 및 정부출연금 산정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급한도액이 감액 될 수 있다.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지원분야별/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의거하여 협약 체결 이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제 집행비용에 50~70%를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금액을 정부출연금 한도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다.
- 수출실적 허위기재(제출)등 허위보고 및 관련문서의 위.변조로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정부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관리기관장은 과제의 중간점검이나 수행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

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⑥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시행 지침에 따른다.

※ 사업진행 기간 중에 지자체 등의 해외인증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본 협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2014년 월 일

(갑) 관리기관장 인

(을) 참여기업 대표자 인

3. 기타 유의사항

- 과제수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년 이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함
-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함.
- 시험기관에 대한 사항
 - 사업운영지침의 【별표 6】 “제품 시험기관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이용토록 함
-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사업운영지침 속지
- 지원대상업체 선정 이후, 협약체결에서부터 과제수행 완료보고까지의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추진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 협약서 작성요령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협약대상자 : 관리기관과 참여기업간 체결
 - (갑)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 ○ ○
 - (을) 참여기업명 대표 ○ ○ ○
- 참여기업은 협약서를 인터넷(웹)에서 작성 후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관리기관에 제출
 - 관리기관은 제출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협약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입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구로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11호 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 (우)152-718
 - 전 화 : 02)860-1312~3
 - F A X : 02)860-1319
 - 담당부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
- 협약서 제출 기간 : 지원대상업체 선정 발표일로부터 10일까지 전자협약서 제출

2. 협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신청서에 기재된 인증명칭, 인증품목, 정부출연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협약서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임
- 과제책임자의 지정
 - 참여기업의 경우 실제 인증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입력하고, 컨설팅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 컨설턴트를 선택
- 정부출연금 한도액
 - “지원분야별/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자동 입력됨

【별지 제5-2호】 고부가가치인증

2014년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협약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참여기업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이하 “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과제 개요)

접수번호 :

관리번호 :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			
주 소						
상시 근로자수	명	과제책임 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E-mail 핸드폰				주요생산품목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불	
전전년도 수출액	불			수출능력구분	수출기업 내수기업	

□신청내용

신청구분	사업분야	인증명칭	신청품목	산업분류코드 (HS code)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예상) (고부가가치인증만해당)	정부출연금한도 액 (천원)
협약1					천원	천원
협약2						
계	과제수행기간*				천원	천원

* 과제수행기간은 협약체결 시작일로부터 1년 임.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추진방법	인증예정기관 (인증기관)	시험예정기관 (시험기관)	컨설팅예정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팅턴트/ 연락처	획득여부 (획득일자)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yy.mm.dd)

- * 참여기업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컨설팅예정기관 및 컨설팅턴트/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음
- * 최근 3개월 이내 해외규격을 기 획득한 기업의 경우 컨설팅기관은 등록된 기관인 경우만 인정

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⑥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시행 지침에 따른다.

※ 사업진행 기간 중에 지자체 등의 해외인증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본 협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2014년 월 일

제 2조 (정부출연금의 산정)

지원분야별/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 인증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갑) 관리기관장 인

제 3조 (과제의 수행, 완료보고 및 정부출연금의 지급)

- ① (을)은 과제수행 완료 후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이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획득비용 실제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산정하고 지급한다.
- ③ 2개 이상의 인증을 수행한 경우 모든 인증 완료 후 전항②을 따른다.
- ④ 2개 이상의 인증 구분은 발행된 인증서 건수에 의거한다.

(을) 참여기업 대표자 인

제 4조 (기 타)

- ① 과제수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을)이 본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내에 과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본 협약은 자동 해약된다.(관리기관이 승인한 참여기업은 제외)
- ② 과제수행 중 소요비용 산정기준 및 정부출연금 산정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급한도액이 감액 될 수 있다.
- ③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지원분야별/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의거하여 협약 체결 이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제 집행비용에 50~70%를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금액을 정부출연금 한도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다.
- ④ 수출실적 허위기재(제출)등 허위보고 및 관련문서의 위.변조로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정부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⑤ 관리기관장은 과제의 중간점검이나 수행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

1. 협약서 작성요령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고부가가치 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 협약대상자 : 관리기관과 참여기업간 체결
(갑)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최형기
(을) 참여기업명 대표 ○ ○ ○
- 참여기업은 협약서를 인터넷(웹)에서 작성 후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관리기관에 제출
 - 관리기관은 제출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협약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입력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1층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 전 화 : 02)507-8123~6
 - F A X : 02)507-8118
 - 담당부서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 협약서 제출 기간 : 지원대상업체 선정 발표일로부터 10일까지 전자협약서 제출

2. 협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신청서에 기재된 인증명칭, 인증품목, 정부출연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협약서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임
- 과제책임자의 지정
 - 참여기업의 경우 실제 인증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입력하고, 컨설팅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 컨설팅턴트를 선택
- 정부출연금 한도액
 - “지원분야별/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자동 입력됨

3. 기타 유의사항

- 과제수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년 이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함
-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함. 단, 고부가가치인증의 경우 통상 획득시간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가능(최장 2년까지 가능)
- 시험기관에 대한 사항
 - 사업운영지침의 【별표 6】 “제품 시험기관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이용토록 함
-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사업운영지침 숙지
- 지원대상업체 선정 이후, 협약체결에서부터 과제수행 완료보고까지의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추진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별지 제6호】

< 과제내용 변경요청 공문 예시 >

문서번호
 시행일자 2014. . .
 수 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일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고부가가치)
 참 조 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일반) /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고부가가치)
 발 신
제 목 협약내용 변경 승인 요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사업운영지침의 규정에 의거, 당사에서 추진 중인 과제
 의 협약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년도	2014년도 제○차		접수번호:
협약인증1	변경항목	인증명칭, 인증품목, 컨설팅기관 등 변경항목 선택기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협약인증2	항 목	인증명칭, 인증품목, 컨설팅기관 등 변경항목 선택기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관련 증빙자료 별첨 : 바이오요청테터, 수출실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참여기업명 대표자 (인)

【별지 제7-1호】 일반규격인증

2014년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완료보고서

접수번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운영지침 및 협약서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
 제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 _____ 대표자 _____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귀하

- 첨부 1. 인증서사본 1부 (DOC의 경우는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제품설계도
 또는 카다로그 각 1부)
 2. 시험성적서 1부(각 시험규격별 요약본)
 3. 성과보고서 1부
 4.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5. 참여기업의 출금통장 거래내역사본 1부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지급확인용)
 6. 정부출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1. 참여기업 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		
주 소					
상시 근로자수	명	과제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E-mail			주요생산품목		
핸드폰			전년도 수출액	불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수출능력구분	수출기업 내수기업	
전전년도 수출액	불				

2. 과제수행 내용

신청구분	사업분야	인증명칭	신청품목	산업분류코드 (HS code)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예상) (고부가가치인증만해당)	정부출연금한도 액 (천원)
협약1					천원	천원
협약2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과제수행기간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및 소요비용

추진방법	인증기관 (소요비용)	시험기관 (소요비용)	컨설팅기관 (소요비용)	컨설팅터/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인증획득 정보

신청구분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획득일자	기인증신청 여부
1. 인증명				
2. 인증명				

3. 정부출연금 산정

신청구분	소요비용 (천원)	소요비용산정액* (천원)	정부출연금한도액** (천원)	최종정부출연금 (천원)
1.				
2.				
계				

* 소요비용 산정액 : 50~70%

** 최종정부출연금 : 소요 비용 산정액과 정부출연금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

4. 정부출연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참여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이 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함

5. 과제 추진에 따른 성과(예상)

구 분	인증획득전 (20xx년)	인증획득후 (20xx년)(예상)	증가율 (전년대비,%)
수출지역수(대상국가수)			
수출액(US \$)			
수출계약건수(건)			
국내매출액(백만원)			
종업원 수(명)			
영업이익(백만원)			

* 아래내용은 서식에 맞추어서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1) 추진경위 및 추진목표
2) 인증추진 절차
3) 추진결과 (인증 전후 50자 이내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비교하여 기술)
1. 경영환경향상 : 인증전 인증후
2. 기술력향상 : “
3. 대외인지도 : “
4. 홍보효과 : “
5. 고용효과 : “
6. 수출전망 : “
4) 컨설팅수행방법 및 주요성과(해당 기업만 작성) (컨설팅 착수단계별 작업내용 기술하고, 현안문제 파악, 해결방안 도출)
5) 인증사후관리 방안
6)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성과보고_업체명.hwp (파일등록완료)

6. 인증획득 추진일정 (년월표기, (예) 2014.05~2014.10)

인증명칭	준비기간	개발기간	시험기간	인증기간

* 준비기간 : 인증필요시기부터 인증소요비용, 컨설팅 결정 등 소요시기
 개발기간 : 순수 제품개발기간(인증획득일과 중복, 선추진 관계없음)
 시험기간 : 순수 제품에 대한 시험 완료 및 Debugging 기간
 인증기간 : 제3자 인증기관에서의 심사 및 공장심사 포함한 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시 인터넷으로 등록한 성과보고서 파일을 인쇄하여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별지 제7-2호】 고부가가치 인증

2014년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완료보고서

접수번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운영지침 및 협약서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파
 제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 _____ 대표자 _____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귀하

- 첨부 1. 인증서사본 1부 (DOC의 경우는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제품설계도 또는 카다로그 각 1부)
2. 시험성적서 1부(각 시험규격별 요약본)
3. 성과보고서 1부
4.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5. 참여기업의 출금통장 거래내역사본 1부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지급확인용)
6. 정부출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1. 참여기업 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		
주 소					
상시 근로자수	명	과제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E-mail			주요생산품목		
핸드폰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불	
전전년도 수출액	불		수출능력구분	수출기업 내수기업	

2. 과제수행 내용

신청구분	사업분야	인증명칭	신청품목	산업분류코드 (HS code)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예상)	정부출연금한도 액 (천원)
협약1					천원	천원
협약2						
계					천원	천원
과제수행기간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및 소요비용

추진방법	인증기관 (소요비용)	시험기관 (소요비용)	컨설팅기관 (소요비용)	컨설턴트/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인증획득 정보

신청구분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획득일자	기인증신청 여부
1. 인증명				
2. 인증명				

3. 정부출연금 산정

신청구분	소요비용 (천원)	소요비용산정액* (천원)	정부출연금한도액** (천원)	최종정부출연금 (천원)
1.				
2.				
계				

* 소요비용 산정액 : 50~70%
 ** 최종정부출연금 : 소요 비용 산정액과 정부출연금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

4. 정부출연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참여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이 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함

5. 과제 추진에 따른 성과(예상)

구 분	인증획득전 (20xx년)	인증획득후 (20xx년)(예상)	증가율 (전년대비,%)
수출지역수(대상국가수)			
수출액(US \$)			
수출계약건수(건)			
국내매출액(백만원)			
종업원 수(명)			
영업이익(백만원)			

※ 아래내용은 서식에 맞추어서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1) 추진경위 및 추진목표
2) 인증추진 절차
3) 추진결과 (인증 전후 50자 이내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비교하여 기술)
1. 경영환경향상 : 인증전 인증후
2. 기술력향상 : “
3. 대외인지도 : “
4. 홍보효과 : “
5. 고용효과 : “
6. 수출전망 : “
4) 컨설팅수행방법 및 주요성과(해당 기업만 작성) (컨설팅 착수단계별 작업내용 기술하고, 현안문제 파악, 해결방안 도출)
5) 인증사후관리 방안
6)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성과보고_업체명.hwp (파일등록완료)

6. 인증획득 추진일정 (년월표기, (예) 2014.05~2014.10)

인증명칭	준비기간	개발기간	시험기간	인증기간

* 준비기간 : 인증필요시기부터 인증소요비용, 컨설팅 결정 등 소요시기
 개발기간 : 순수 제품개발기간(인증획득일과 중복, 선추진 관계없음)
 시험기간 : 순수 제품에 대한 시험 완료 및 Debugging 기간
 인증기간 : 제3자 인증기관에서의 심사 및 공장심사 포함한 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시 인터넷으로 등록한 성과보고서 파일을 인쇄하여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별지 제8호】

맞춤형 기업 지원서비스 신청서

(접수번호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인증명칭	제품명(분야)	()
요구규격	수출지역	
제품특성		
애로사항		
면담방식(택일)	현장방문	기관방문
과제책임자	직 책 :	성 명 :
	연락처 :	(인)

~

상기업체는 위 내용과 같이 맞춤형 기업현장 지원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참 여 기 업 명 대 표 자 (인)

【별지 제9호】

○○○○○ 참가 확인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용 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구비서류	
참 가	전시회명	기 간
	시장개최단명	
참가 국가		
참여기관 확인란	직 책 :	성 명 :
	연락처 :	(인)
상기업체는 위 내용과 같이 ○○○○○ 사업 참여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관인)		

【별표 1】

해외규격인증획득 일반규격인증 대상분야 (218개 규격인증)

1	AAR(미국철도협회)	25	ARAI(인도 자동차 협회)	49	CMA(중국계측학회가 인증)
2	ABS(미국선급협회)	26	ARTC(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50	CNS(대만국가표준)
3	ACMI AP(미국장작제조협회)	27	AS(호주규격협회)	51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4	ACRS(호주 신뢰성인증)	28	ASME(미국기계학회)	52	Conforming Golf balls(국제 골프제품 안전인증)
5	AD2000(독일 압력용기 인증)	29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53	COSPAS-SARSAT(초단경보기 또는 위치 정보 제품 인증)
6	AmBlue(유럽 자동차 엔진저압인증)	30	A-Tick(호주전자과적합성규격)	54	COSQC(이라크표준)
7	ADR(호주 자동차 안전 및 배기량 규격)	31	ATF(부패성 음식의 수송적합 승인)	55	CPRI(인도전기 전력인증)
8	AEM(장비 제조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무역협회 인증)	32	BAA(일본전자기 안전기준)	56	CPISA(미국소비제품안전인증)
9	AENOR(스페인규격협회)	33	BABT(영국통신기술인)	57	CQC(중국 제품안전 자율인증)
10	AGA(가스안전인증 - 호주)	34	BBA(영국전자제품인증)	58	CR(대만선급)
11	AGA(미국가스협회)	35	BIS(인도제품인증)	59	CSA(캐나다표준규격)
12	AHRI(미국 냉방난방협회)	36	BLUESIGN(섬유화학물질 인증제도)	60	CSEL(중국보일러 및 압력용기 인증)
13	ALE 1.0(RFID 제품 인증)	37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61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14	AMCA(공조기 시스템 국제협회)	38	BOKEN(일본방직검사협회)	62	CSTB(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15	AMECA(미국 자동차 안전 부품인증)	39	BQBE(블루투스 제품 간 호환성 확보 목적의 인증)	63	CTI(미국냉각탑협회, 미국 열선능)
16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40	BSI BS EN489(유럽 열(히트) 파이프 지원)	64	C-Tick(호주전자과적합성규격)
17	ANMATI(아르헨티나 의요기기 인증)	41	BSI(영국표준협회)	65	CU(러시아 강제인증)
18	ANSI(미국규격협회)	42	BSMI(표준검정협국)	66	DEMR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19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	43	BV(프랑스선급협회)	67	DIN(독일규격협회)
20	ANSI/BHMA(미국 건축 제품 인증)	44	CCC(중국필수인증)	68	DLCL(북미 에너지절감 인증)
21	ANSI/BIFMA (미국사무및가구 제품인증)	45	CCS(중국선급인증)	69	DILMS-COSEM(계량장비 프로토콜의 시험인증)
22	ANVISA(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46	CE(유럽공동체마크)	70	DNV(노르웨이선급협회)
23	API(미국석유학회)	47	CEBEC(벨기에 전기기기 시험소)	71	DOT(미국운수성)
24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48	CGAQ(중국가스용품 품질감독시험센터)	72	ECOCERT(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국가별 (지원선수)	지원규격		
브라질 (3)	ANVISA(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아라비아 (1)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 (1)	TSE(터키 강제인증)		
싱가포르 (2)	PSB(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HAS(싱가포르 의뢰기기 등록)	
아르헨티나 (2)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ANMAT(아르헨티나 의뢰기기인증)	
인도 (6)	ARAI(인도 자동차 협회)	BIS(인도제품인증)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TRA(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RDSO(인도 철도인증)	WPC(인도 통신기기 인증)
인도네시아 (1)	SNi(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중국 (17)	CCC(중국필수인증)	CCS(중국선급인증)	CQC(중국 제품안전 자율인증)
	CSEL(중국 보일러 및 압력용기 인증)	CSQL(중국안전제품 필수인)	MOHW(중국보건의료인증)
	NAL(중국통신인증)	NEPSI(중국 방폭관련인증)	NDM(중국해양과항해)
	SFDA(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중국수입철기재 등록
	중국위생허가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중국)	CGAC(중국가스용품 품질검정시험센터)
	CMA(중국계측학허가 인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캐나다 (1)	GOST-K(캐나다표준인증)		
캐나다 (4)	CSA(캐나다표준규격)	IC(캐나다산업성)	TC(캐나다 위험물 운송 인증)
	HC(캐나다의뢰기기인증)		
쿠웨이트 (1)	KUCAS(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호주 (10)	AIEE(호주 자동차 안전 및 배기량 규격)	AS(호주규격협회)	A-Tick(호주전자과적합성규격-유선)
	C-Tick(호주전자과적합성규격-무선)	SAI GLOBAL (호주제품보증협회: QAS)	TGA(호주 의약품 규제 기관)
	Water Mark(호주 배관제품인증)	WELS(호주 물 효율 라벨링제도)	ACRS(호주 신뢰성인증)
	AGA(가스안전인증 - 호주)		
홍콩 (1)	OFTA(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1)	COSQC(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공화국 (1)	ICASA(남아프리카 공화국 독립통신 위원회)		
이란 (1)	ISIRI(이란 강제인증)		
나이지리아 (1)	SONCAP(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국가별 (지원선수)	지원규격		
국제 (37)	AEM(장비 제조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무역협회 인증)	GOTS (국제유기농 섬유규격)	ALE 1.0(RFID 제품 인증)
	ATP(무폐성 음식의 수출 적합 승인)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BQB(블루투스 제품 간 호환성 확보 목적의 인증)
	BSMI(표준검정국)	COSPAS-SARSAT(조선경보기 또는 위치 정보 제품 인증)	DLMS-COSEM(계량장비 프로토콜의 시험인증)
	NFPA1971 (가연성 제품의 화재방지 규격)	OE(유기농 목화 섬유에 대한 인증)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HALAL(IFANCA)(이슬람교식 및 영양협회)	HDMI(FC와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KOSHER(유대교식품제조법인증)
	LPCEB(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 측정 및 검사규격)	SINCERT(고압 전기제품 및 부품 인증)
	Toxproof(환경유해물질 안전마크)	TCO05 (정보사무기기 효율인증)	WPS(선급검정절차승인)
	FTC (화염시험인증)	Conforming Golf Balls(국제 골프공 안전인증)	EMV(국제 IC카드 보안 인증)
	FSC(국제산림관리협회)	HSNO APPROVAL(유해물질과 신규 생물관련 인증)	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
	PCI(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국제규격)	AMCA(공조기 시스템 국제협회)	BLUESIG(섬유화학물질 인증제도)
	NADCAP(국제 항공기 자동차 부품인증)	Profibus(국제 공장자동화 기기인증)	SIL(국제 안전레벨 등급인증)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 상호 호환성 인증)		

【별표 3】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점수출연금 한도기준

(금액 : 천원)

지원규격명	제품분야별	세분류	출연금한도액			분야 코드
			한도 기준	내수	수출	
CE	전기,전자 제품류	전기안전, 전자과중 1개 시험기준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2,400	1,700	1,200	1CEEL1
		전기안전, 전자과중 1개 시험기준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4,600	3,300	2,300	1CEEL1-R
		전기안전, 전자과 2개 시험기준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4,400	3,100	2,200	1CEEL2
		전기안전, 전자과 2개 시험기준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6,600	4,700	3,300	1CEEL2-R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과 포함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9,800	6,900	4,900	CEEL3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과 포함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12,000	8,400	6,000	CEEL3-R
	기계 제품류	EC지침 기계류부속4 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5,000	3,500	2,500	1CEMD1
		EC지침 기계류부속4에 포함되는 경우	11,000	7,700	5,500	CEMD2
	의뢰기기	CLASS I	1,600	1,200	800	1CEME1
		CLASS II	14,000	9,800	7,000	CEME2
		CLASS III	42,000	30,000	21,000	CEME3
	방폭장비	ATEX	11,000	7,700	5,500	CEEX
	압력기기	PED	7,800	5,500	3,900	CEPED
	기타제품류	-	5,800	4,100	2,900	CEETC
FCC	통신제품류	PART 15, 68	2,600	1,900	1,300	FCC1
	휴대통신기기	PART 22, 24	8,000	5,600	4,000	FCC2
FDA	의뢰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2,600	1,900	1,300	FDA0
		510(k)급	14,000	9,800	7,000	FDA1
	PMA	42,000	30,000	21,000	FDA2	
화장품, 식품, 화학제품 등	검사	2,200	1,600	1,100	FDA3	
NRTL	UL	8,200	5,800	4,100	UL	
	UL 이외의 NRTL	7,400	5,200	3,700	NRTL	
선급분야	형식승인(Type Approval)	7,000	4,900	3,500	SHIP1	
	검사(Inspection Certificate)	1,800	1,300	900	SHIP2	

지원규격명	세분류	출연금한도액			분야 코드
		한도 기준	내수	수출	
C-Tick	-	3,800	2,700	1,900	-
CPSIA	-	2,400	1,700	1,200	-
PSE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인증서 미발급)	4,400	3,100	2,200	1PSE1
	특정 전기용품(인증서 발급)	6,600	4,700	3,300	PSE2
REACH	-	2,400	1,700	1,200	-
RoHS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2,400	1,700	1,200	-
SEMI	-	11,800	8,300	5,900	-
	인증서 미발급	5,000	3,500	2,500	ETC1
기타제품분야	인증서 발급	14,000	10,000	7,000	ETC2

* CSA, TUV 인증종 OSHA(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에서 지정한 적용범위와 해당규격으로 시험한 경우에는 NRTL로 지원

* 1은 1개 인증만 가능한 분야임. (단, 다른 인증분야와는 2개인증 가능)

【별표 4】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소요비용 인정 기준

(O : 인정)

지원규격명	제품분야별	세분류	소요비용 인정여부			분야 코드	건설형 소요비용한도 (천원)	
			인중	시험	건설형			
CE	전기.전자 제품류	전기안전, 전자파중 1개시험기준	O	O	O	CEEL1	200	
		전기안전, 전자파 2개시험기준	O	O	O	CEEL2	200	
		유무선통신(전기안전, 전자파 포함)	O	O	O	CEEL3	2,200	
	기계제품류	EC지침 기계류부속서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O	O	O	CEMD1	1,100	
		EC지침 기계류부속서4에 포함되는 경우	O	O	O	CEMD2	2,200	
	의료기기	CLASS I	O	O	O	CEME1	200	
		CLASS II	O	O	O	CEME2	3,300	
		CLASS III	O	O	O	CEME3	4,400	
	방폭장비	ATEX	O	O	O	CEEX	2,200	
	압력기기	PED	O	O	O	CEPED	1,100	
	기타제품류	-	O	O	O	CEETC	600	
	FCC	통신제품류	PART 15, 68	O	O	O	FCC1	200
		휴대폰기기	PART 22, 24	O	O	O	FCC2	2,200
FDA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O	-	O	FDA0	200	
		510(k)급	O	O	O	FDA1	3,300	
		PMA	O	O	O	FDA2	4,400	
	화장품, 식품, 화학제품 등	-	O	O	FDA3	200		

지원규격명	제품분야별	세분류	소요비용 인정 여부			분야 코드	건설형 소요비용한도 (천원)
			인중	시험	건설형		
NRTL		UL	O	O	O	UL	200
		UL 이외의 NRTL	O	O	O	NRTL	200
선급분야		형식승인(Type Approval)	O	O	O	SHIP1	600
		검사(Inspection Certificate)	-	O	O	SHIP2	200
C-Tick		-	O	O	O	-	600
CPSIA		-	-	O	O	-	200
PSE		-	O	O	O	-	600
REACH		-	-	O	O	-	200
RoHS		-	-	O	O	-	200
SEMI		-	O	O	O	-	2,200
기타제품분야		인증서 미발급	O	O	O	ETC1	1,000
		인증서 발급	O	O	O	ETC2	2,800

【별표 5】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업체 평가표

접수번호 : 2014 01 00 -

업체명 :

평가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가방법	점수
수출 경쟁력 (20)	수출액 비중(전년도기준) * 수출액/매출액*100	5점	- 20%이상(5), 10~20%미만(4), 10%미만(3)	
	수출증가율 * (전년-전전년 수출액)/전전년 수출액*100	5점	- 9%이상(5), 6~9%미만(4), 6%미만(3) * 외환은행 년평균 고시환율 적용 (12) 1,126.25원/\$, (13) 1,094.70원/\$	
*수출 기업만 적용	수출실적기업	10점	- 적전 회계년도 연간 수출실적(1만달러 1점 [현물달러에서 환율]) * 판세청 통관자료만 인정 - 수출실적 5만불 미만(4점) * 내수기업은 수출경쟁력 항목 기본점수 20점으로 하여 평가	
	해외마케팅 활동	10점	-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해외민간네트워킹 선정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해외지사(건당 5점, 최대 10점) - 해외 마케팅 활동 없음(4점)	
수출 기반 (20)	수출준비 활동	10점	- 홈페이지(한글) 보유, 홈페이지(영문) 보유, 외국어카타로그, 해외상품홍보지 광고 등(건당 5점) - 수출 준비활동 없음(4점)	
	품질경영시스템 확보기업	20점	- 상급PPM, KS, KGMP, GMP, HACCP,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건당 10점, 최대20점) - 미확보기업(8점)	
기술 품질성 (60)	품질관리 운영	20점	- 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 보유(20), 품질관리 전담인력 보유(15) - 품질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없음(8점)	
	신기술 보유 기업	20점	- NET, NEP, 특허, 실용신안 등록 (각 건당 10점, 최대20점) * 기업기업은 대표자, 법인인 법인명의로 등록 된 경우만 인정 - 미 보유기업(8점)	
가점 (10점)	총 계	100점		
	지방소재 업체	3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3점	- KTL-KTR 지방중기청 시행 해외규격인증 교육 이수 수료증제출(일반교육 1점, 심화교육 3점) * (신청 시작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당해년도)) (최대 3점)	
혁신형 중소기업 등	4점	- Inno-Biz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녹색기업 (기술 사업, 전문) 창업기업, 수위탁거래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대형유통망 진출기업, Hb500선정기업 (건당 2점, 최대 4점)		

평가담당자 : (인)

【별표 5-1】

해외규격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방법

연번	구비서류명	확인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1	수출실적	*판세청 통관자료 확인	본청 해외시장과	042-481-4461
2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최근 2년간 참여기업(개별기업 참가포함) - 시장개척단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중소기업중앙회 지자체 등	
3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최근 2년간 참여기업(개별기업 참가포함) -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중소기업중앙회 지자체 등	
4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관세청	
5	해외민간네트워킹참여기업	*최근 2년간 참여기업 -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	본청 해외시장과	042-481-4473
6	수출인큐베이터	*최근 2년간 참여기업 -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	본청 해외시장과	042-481-4473
7	해외지사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	지방청	
8	수출준비도	*홈페이지(한글 및 영문) 보유여부 *외국어카타로그 및 해외상품홍보지	지방청	
9	상급 PPM	*상급PPM품질혁신추진본부 (http://sppm.korcham.net) → 자료실 → 품질혁신기업인물DB → 인증기업DB → 검색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대한상공회의소 품질혁신추진본부	02-6050-3854
10	KS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www.standard.go.kr) → 국가표준 → KS 인증 → KS표시인증업체 → 인증업체 검색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한국표준협회	02-6009-4114
11	KGMP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약품품질과	043-719-2775
12	GMP	*식품의약품안전처(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 →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분야) → 검색(확인)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8
13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 → 검색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043-719-2858
14	ISO9000 등	*한국인정원(www.kab.or.kr) → 통계 및 조회 → 국내ISO인증유지기업 조회 → 인증기업검색 - 신청업체 제출서류 확인	한국인정원	02-6673-6850
15	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회사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지방청	
16	NET	*NET신기술인증(www.netmark.or.kr) → 인증기업검색 - 통계자료 → 상세검색 → 회사명 → 검색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02-3460-9023
17	NEP	*NEP신제품인증(www.kat.s.go.kr/nep/) → 신제품/업체검색 → 인증업체 제품검색 → 인증제품명/인증업체명 검색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02-509-7286

전 문

우리는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며 나아가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는 초석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모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본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적극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컨설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를 임한다.

하나, 우리는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 자기개발

공공의 이익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5. 기술적인 역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가장해서는 아니된다.

6. 공정한 직무 수행

자신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 청탁 등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7. 고객의 이익

고객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이익을 주겠다는 목적을 갖고서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완전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서비스로부터 수익이 창출된다고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8. 기밀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기밀로 다루고 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적 또는 그 밖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는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 컨설팅 비용

고객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적 도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하며,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맞은 책임에 알맞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고객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1. 전문 업무영역

자신의 전문 업무범위와 영역을 달리하는 분야의 업무는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목적

윤리강령은 컨설팅업무 수행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컨설턴트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강령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컨설팅에 참여한 컨설턴트들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1. 기본자세

- ① 컨설턴트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2. 행동규범

- ① 컨설턴트는 모든 고객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에 대한 기밀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
- 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책임완수

지원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공감하여 신뢰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컨설팅의 목적, 대상범위, 컨설팅 비용 및 계산 방법에 대해 고객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야 한다.

13. 보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일 컨설팅 수행내용을 고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고객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이익을 모든 행동의 최후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고객만족

- 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고객의 이익보호

-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의 자산, 정보, 지적재산권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사후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후에도 고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고객에게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

1.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 ①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직무수행의 질적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컨설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별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된 컨설팅의 업무와 절차를 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1. 관계법령의 준수

컨설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컨설턴트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고객과의 관계

- ① 고객의 정당한 업무 의뢰를 거부·기피하거나, 컨설팅 계약 체결시 허위 약정하지 않는다.
- ② 고객이 부정한 방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자문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대여하여 고객을 기만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밀유지

- ① 고객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②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 및 소유 데이터, 절차, 자료를 자신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이전 고객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이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부당경쟁

- 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개인을 내세우거나 권력의 이용 또는 금전 등을 제공하여 자신을 위촉할 것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 ② 다른 컨설턴트가 체결한 선점 계약을 무시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수료

- ① 컨설팅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고객이나 고객의 지원부서 종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고객의 조직내부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해주는 대가로 컨설팅 비용 외의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③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중이거나 제공한 후에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을 해주는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6. 예측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객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장래에 대한 예측 또는 컨설팅 제공 후의 성과에 대해 그 정확성을 단정적으로 보증하지 않아야 한다.

7. 광고 선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게 하거나 과대하게 선전하는 방법 또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2】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안내

□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안내

○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는 수출대상국가의 제품규격 및 관련 인증정보를 중소기업에 널리 보급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설치되었습니다.

○ 본 센터에서는 Web기반의 해외규격인증정보 DB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인증관련 최신정보를 On-line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외규격의 검색, 열람 및 보급서비스
- 해외인증기관 소개 및 인증절차 안내
- 중소기업청 해외인증지원관련 인증제품 및 컨설팅기관 정보제공
- 해외인증기관의 최신뉴스, 정보제공
- 인증관련 교육, 세미나기술자료 제공
- 인증관련 사이트안내 및 상담서비스

※ 웹사이트 주소 : 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는 전 세계 155개 규격발행기관, 56만건의 규격을 DB화하여 기업에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외규격 정보검색 이용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해외규격인증정보] → [해외규격정보검색] 메뉴로 접속합니다.

* [해외규격인증정보] → [해외규격정보검색]은 로그인 후 상단메뉴에 위치

○ [규격통합검색]의 하부 메뉴인 '규격명', '발행년도', '키워드', '규격번호', 'ICS 코드'에 필요한 검색어를 넣어 필요한 규격을 검색합니다.

【 IEC 규격 중 quality를 검색어로 검색한 사례 】

The screenshot shows the '해외규격정보검색' (Foreign Specification Search) interface. The search criteria are: 규격명: IEC, 발행년도: 2010, 키워드: quality. The results table is as follows:

번호	규격명	규격번호	제목	발행일자
35	IEC	IEC TR23794-4(2010-04-01)	Information technology ?Biometric sample quality ?Part 4: Finger image data First Edition	2010/04/01
34	IEC	IEC TR23794-5(2010-04-01)	Information technology ?Biometric sample quality ?Part 5: Face image data First Edition	2010/04/01

○ 찾고자 하는 규격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규격에 대한 요약, 보급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격 본문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규격열람 지정 장소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경기북부사무소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원 및 지역본부(서울, 안산, 대전, 원주)

해외규격인증정보 검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인증센터

○ 전 화 : 02-860-1312~3, FAX : 02-860-1319